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정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679

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이정문・안민석・문진석

기동민 · 도종환 · 민형배

변재일 · 김철민 · 신동근

김병기 · 이용빈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,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승차 공유업체 이용자의 범죄사건과 같이 의사표시나 사전동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,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 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전 체 매출액의 3%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% 등으로 설정되어 전체 매출액의 4%인 유럽에비하여 경미한 수준이며, 일부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,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제15조제1항제5호, 제18조제2항 및 제64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5호 중 "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"를 "명백히"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다만, 이용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경우 제1호·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, 제5호부터"를 "다만, 제5호부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"를 "명백히"로 한다.

제26조제7항 중 "및 제59조를"을 ", 제59조 및 제64조의2를"로 한다. 제28조의6을 삭제한다.

제34조의2를 삭제한다.

제39조의15를 삭제한다.

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 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 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 - 1. 제15조제1항, 제17조제1항·제2항, 제18조제1항·제2항 및 제19조 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이용·제공한 경우
 - 2. 제22조제6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 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
 - 3. 제23조제1항제1호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
 - 4. 제24조제1항, 제24조의2제1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경우
 - 5. 제26조제4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리·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- 6. 제28조의5제1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
- 7.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(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한 경우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8. 제36조제2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·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
- 9. 제37조제2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
- 10. 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경우
- 11. 제39조의12제2항 본문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 당 개인정보처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

- 회계자료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·규모 및 상품·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.
-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- 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
-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-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

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
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	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	①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	
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	
서 이용할 수 있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	5. <u>명백히</u>
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	
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	
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	
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	
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	
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	
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	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
·제공 제한) ① (생 략)	•제공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	②
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	
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	

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다. 다만, 이용자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|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 보통신서비스 제공자(「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기 제2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이 하 같다)의 경우 제1호 · 제2호 의 경우로 한정하고,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 의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 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<u>다만, 제5호부터</u>	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<u>명백히</u>-----

4. ~ 9.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략)

부터 제25조까지,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, 제33조부터 제38조 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.

제28조의6(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) ① 보호위원 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 의5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 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 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 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 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② 과징금의 부과·징수 등에

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제3항

4. ~ 9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 보의 처리 제한) ① ~ ⑥ (생 보의 처리 제한) ① ~ ⑥ (현 행과 같음) ----, 제59조 및 제64조의2를-------<삭 제>

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.

제34조의2(과징금의 부과 등) ① | <삭 제>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·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 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 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.
- 1.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 력 정도
- 2.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 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 의 정도
- 3.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

조치 이행 여부

-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 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 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 다.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 한다.
-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.
- ⑤ 과징금의 부과 · 징수에 관 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15(과징금의 부과 등에 <삭 제> 대한 특례)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.

- 1. 제17조제1항·제2항, 제18조 제1항·제2항 및 제19조(제39 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개 인정보를 이용·제공한 경우
- 2. 제22조제6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수집한 경우
- 3. 제23조제1항제1호(제39조의1 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 보를 수집한 경우
- 4. 제26조제4항(제39조의14에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리・감독 또는

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

 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

 한 경우

- 5.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· 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 치(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한 경우(제39조의14에 따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
- 6. 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 보를 수집한 경우
- 7. 제39조의12제2항 본문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

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제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있다.

-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- 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-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
-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

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 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-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8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

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.

<신 설>

제64조의2(과징금의 부과)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수 있다. 다만,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다.

- 1. 제15조제1항, 제17조제1항 · 제2항, 제18조제1항 · 제2항 및 제19조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이용 · 제공한 경우
- 2. 제22조제6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

수집한 경우

- 3. 제23조제1항제1호(제26조제7 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정보주 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
- 4. 제24조제1항, 제24조의2제1 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 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한 경우
- 5. 제26조제4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관리·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- 6. 제28조의5제1항(제26조제7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
- 7. 개인정보를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한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(내부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제외한다)를 하지 아니한 경

- 우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8. 제36조제2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·삭제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경우
- 9. 제37조제2항(제26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
- 10. 제39조의3제1항(제39조의14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 보를 수집한 경우
- 11. 제39조의12제2항 본문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 과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 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 리자와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 보처리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・규모 및 상품・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 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.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 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, 구체 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 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 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

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-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,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따라 징수한다.
- ①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 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 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 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 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

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.